

영등포구의회
제218회 제2차 정례회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9. 12. 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90호로 2019년 11월 2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2월 0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영등포구의회의 의결 후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신길6동 공공문화 복합센터 건립 관련 관리계획 변경】

- 당초 신길6동 4052, 4082번지를 매입하여 공공문화 복합센터를 건립코자 제211회 2018년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 매도 호가 상승 등의 이유로 사업위치 및 내용이 변경되어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재의 결을 받고자 함

4.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 재산

□ "신길6동 공공문화 복합센터" 건립 관련 관리계획 변경

구분	재산의 표시			소유자	건물 재산가액 (단위:천원)				비 고	
	소재지	취득현황(㎡)			토 지		건 물			
		토지	건물		공시지가 (천원/㎡)	금액	단가 (천원/㎡)	금액		
변경 전	매입	신길동 4052	126	82.45	김순자	2,577	324,702	75	6,187	제211회 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결
		신길동 4082	96	116.15		2,654	254,784	99	9,460	
	신축	신길동 4052, 4082	-	444	영등포구	-	-	2,656	1,391,994	
변경 후	매입	신길동 580	184.1	249.81	맹용호	3,550	653,555	83	20,734	사업위치 등 변경
	신축	신길동 580	-	330	영등포구	-	-	3,361	1,229,063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

6. 검토의견

○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0억이상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변경됨에 따라,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우리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 본 안건은,

- 2018년도 제2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신길동 4052, 4082번지의 토지 222 m^2 지하1층/지상2층 건물 매입을 통해, 지상4층, 연면적 524 m^2 규모의 “공공문화 복합시설” 건립으로 승인된 사항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신길동 580번지의 토지 184.1 m^2 지하1층/지상2층 건물 매입을 통해, 지상3층, 연면적 330 m^2 규모의 “공공문화 복합센터” 건립으로 사업장 위치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총 사업규모는 구비 30억 8백만원이며,

- 세부 내역은, 부지매입비 17억 7천 9백만원, 설계용역비 등 건축비 11억 9백만원, 감정평가비용 등 부대비 1억 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 신길6동은 상대적으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여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소외감과 문화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은 지역으로,

마을도서관, 경로당, 키움센터 등이 공존하는 주민복지를 위한 공공문화 복합센터를 신축하는 것은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있어 사유지를 매수할 경우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사자 간 사전협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 또한, 추진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표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확충 방안 마련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취소포함)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영등포구의회
제218회 제2차 정례회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9. 12. 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76호로 2019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영등포구의회 의결 후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신길12구역 사회복지 복합시설 건립】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내 기부채납지에 아동, 여성, 어르신 등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더불어 잘사는 복지도시 영등포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4.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 재산

□ 신길12구역 사회복지 복합시설 건립의 건

재산의 표시			소유자	재산가액 (단위:천원)				비고
소재지	취득현황(㎡)			토지		건물		
	토지	건물		공시지가 (천원/㎡)	금액	단가 (천원/㎡)	금액	
신길동 339-30	-	5,279	영등포구	-	-	3,526	18,616,011	신축 공사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

6. 검토의견

-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우리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 본 안건은,

- 신길동 339-30번지 일대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기부채납지 2,890 m^2 에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5,279 m^2 규모의 “사회복지 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 총 사업규모는 186억 1천 6백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22억 4천 8백만원, 시비 11억 1천 4백만원, 구비 152억 5천 4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은, 공사비 158억 4백만원, 타당성조사 등 용역비 23억 6천 4백만원, 에너지효율 녹색인증 등 부대비 4억 4천 7백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그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면,

2019년에는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천 9백만원, 2020년에는 설계비로 7억 7천 1백만원, 공사비 등으로 2021년 178억 1천 7백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 수요자 중심의 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과 생활권 내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하여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건립하는 신길12구역 사회복지 복합시설은, 신길동 및 대림동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라 요구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기능적 연계가 가능한 복합시설 운영으로 인한 설치 및 운영 예산의 절감, 효율적인 부지사용 등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설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및 구민의 이용편의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향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표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확충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4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소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